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의 편의시설 발전 방안

Development Plan of Convenience Facilities of Museum for the Disabled

강병훈¹, 김민영²

Byunghun Kang¹, Minyoung Kim^{2*}

요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시설물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건립한 공공시설인 박물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 거동과 생활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광범위한 시각에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박물관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어: 장애인, 편의시설, 박물관, 장애인 복지

Abstract

According to the ‘Act on the Security of the Convenience Promotion for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convenient facilities refer to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convenience of mobility, the use of facility and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life of disabled people. However,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the disabled are not provided properly in many public infrastructures in Korea. In this paper, we will discuss the factual survey an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bout the facilities for disabled people in the museum, a public building established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It raises the need for amenities in a broad perspective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who are uncomfortable with their behavior and life. Since the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museums are the driving force for raising the accessibility of disabled people and encouraging them to return, it is necessary to specify legal regulations and constant research.

Keyword: Disabled people, Facilities, Museum, Welfare for the Disabled.

1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byunghun.kang@kookmin.ac.kr

2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 77 Jeongneung-ro, Seongbuk-gu, Seoul, 02707, Korea
e-mail: minyoung.kim@kookmin.ac.kr (Corresponding author)

Received(April 30.2015), Review (June 11.2015), Accepted(June 30.2015)

1. 머리말

1998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1]. 이러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대상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이다.

특히,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및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1]. 또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늘리기 위한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정비를 통해 문화생활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2].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및 시설물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건립한 공공시설인 박물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거동과 생활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광범위한 시각에서 편의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2. 지체장애인과 박물관 편의시설

1. 지체장애인의 정의

(1) 개념 및 원인

지체장애란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장애, 변형 등의 장애를 말하며, 이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3]. 지체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출생 이전의 유전적 결함이나 출생 전후의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태아의 발달에 지장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전, 염색체 이상, 대사장애,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약물복용, 매독, 풍진, 난산, 조산, 혈액형 부조화(산모가 Rh- 혈액인자 보유), 고령임신 등의 원인이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는 정확한 선천적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 후천적 원인은 출생 이후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경우로 각종 질환에 의한 신경계 손상,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 산업재해 등의 외상에 의한 경우이거나 당뇨병, 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등의 만성질환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인 지체장애로는 지체기능장애, 관절장애, 절단장애, 변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체기능장애는 팔과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이는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일 수 있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악화된 상태이다. 두 번째,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관절의 불안정이 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절단은 상지나 하지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며 선천적 결손도 포함한다. 네 번째, 변형은 척추나 상·하지의 형태가 변질된 상태로서 기능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다리길이의 단축, 척추의 만곡, 왜소증 등을 말한다.

(2)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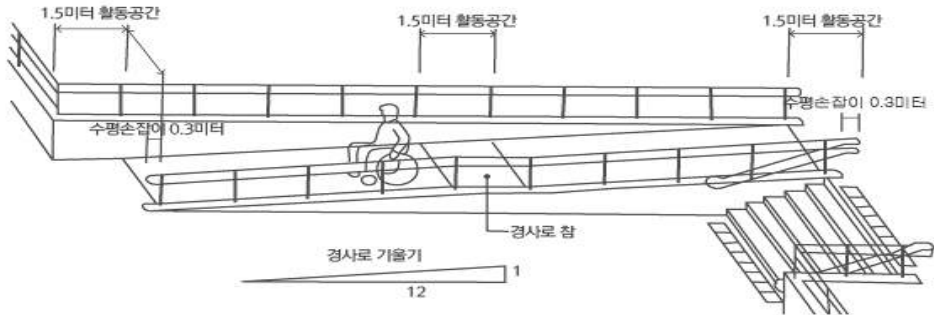
지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운동기능장애에 문제를 보이는 사람이 가장 많다. 근육이나 관절을 오래 사용하지 않거나 마비가 장기간 지속되면 대부분 근력이 약해지거나 위축, 경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한 운동기능장애는 주로 이동이나 손 동작의 곤란을 야기하며, 곤란은 유아기에 탐색활동을 제한시키고 학령기에는 경험부족을 유발시켜 학업부진이나 학습장애를 일으킨다. 이후 청년기에는 열등감을 야기 시키기도 하며 결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될 수도 있다. 특히 후천적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은 과거에 가졌던 신체능력과 생활방식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장애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의지와 적응하는 기술도 요구된다.

2. 장애인의 편의시설 지정안 및 보장법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법률화하고 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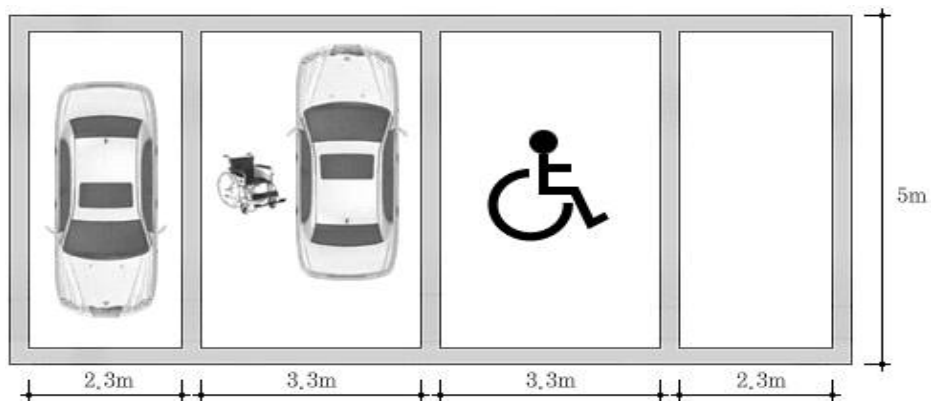
(1) 편의시설 구조 및 재질에 대한 규정

다음 그림은 편의시설 구조 및 재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기본적인 동선을 중심으로 규정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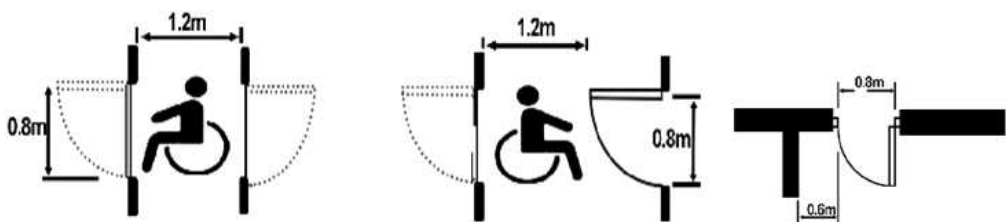
[그림 1] 주 출입 접근로

[Fig 1] Main access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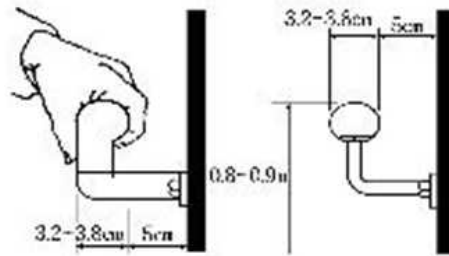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인 전용 주차장

[Fig 2] Parking for disabled per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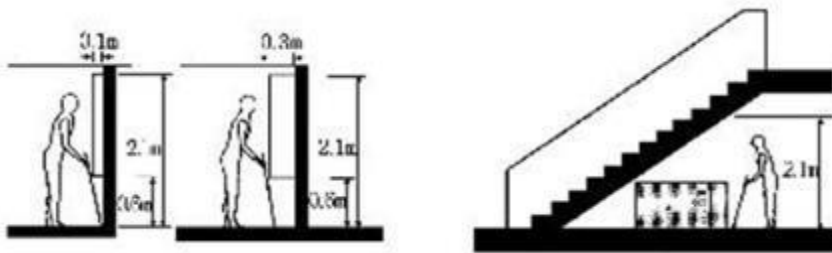
[그림 3] 출입구(문)

[Fig 3] Doorway(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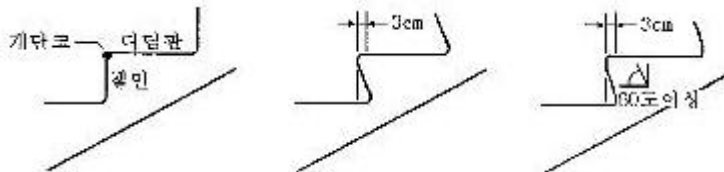
[그림 4] 복도 손잡이

[Fig 4] Corridor han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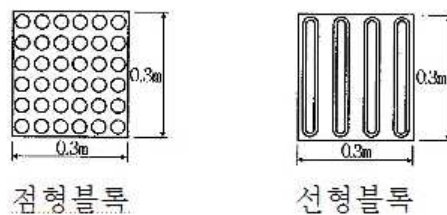
[그림 5] 복도 보행 장애물(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Fig 5] Walking obstacles in the corridor (access barrier or guardrail instal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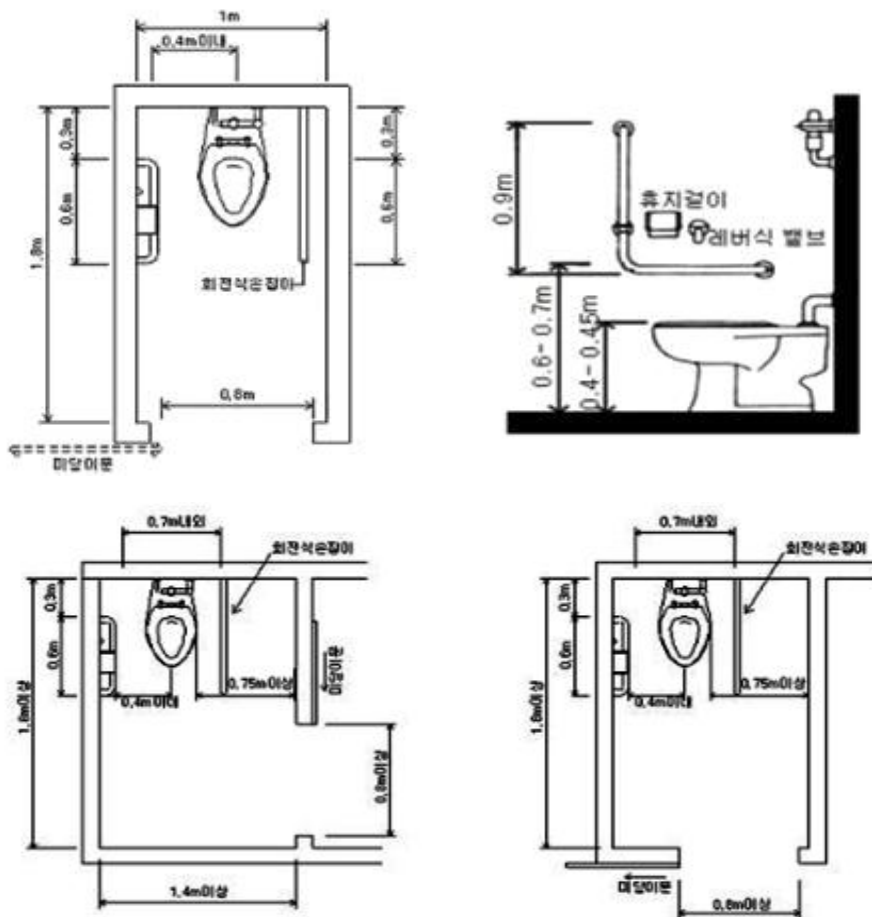
[그림 6] 계단

[Fig 6] Stairs



[그림 7] 동선안내블록

[Fig 7] Guide line



[그림 8] 화장실

[Fig 8] Restroom

(2)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의 편의시설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서비스(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등), 수화통역(청각, 언어장애인 등) 등 편의제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 지체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의 편의시설 현황

1. 지체장애인을 위한 국내박물관 편의시설 실태조사

서울권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을, 지방권에서는 경기대학교박물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1)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하기 위해 건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으로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에 위치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광장과 화장실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5]. 광장의 바닥에는 시각 및 저 시력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으나 일부는 떨어져 나갔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격이외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광장의 편의점 옆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모두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 마련되어 있어 불편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박물관의 입구 경사로 손잡이(핸드레일)의 점자표지판 앞에는 커다란 화분이 길게 놓여 있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이 쉽지 않게 되어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입구 경사로 손잡이(핸드레일) 점자표지판 앞에는 커다란 화분이 길게 놓여 있다.



[그림 9] 입구 경사로

[Fig 9] Entrance ramp

남성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비상호출버튼이 없고, 용변 후 손발로 눌러 물을 내릴 수 있는 세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은 물내림 손잡이 사용이 힘들게 되어 있다.



[그림 10] 남성 장애인 화장실
[Fig 10] Male handicapped rest room

여성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남성이 사용하는 소변기가 있다. 또한 손잡이와 용변기 뒤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휴지걸이는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용하기에는 조금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11] 여성 장애인 화장실
[Fig 11] Female handicapped rest room

(2)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특별시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 2002년에 개관한 공립박물관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광장과 화장실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6]. 박물관의 광장에는 저 시력 장애인이 구분하기 힘든 회색의 점자블록이 있고, 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화장실의 경우에는 모두 비장애인 화장실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문은 여닫이 문이며,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그림 12] 비장애인 화장실 안의 장애인 화장실

[Fig 12] Handicapped restroom in non-disabled toilet

장애인화장실의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힘든 여닫이이며, 문고리 잠금장치도 사용이 힘들다. 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가 없으며, 휴지걸이는 조금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반면 비상호출버튼은 사용하기 편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비장애인화장실 내에 설치된 세면대 양 옆에는 상하 가동식이 아닌 고정식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가 된다.



[그림 13] 세면대 손잡이
[Fig 13] Washbasin handle

남성비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는 소변기의 경우 위치가 높아 일부 장애인들 사용하기 힘들다. 또한 비장애인화장실 입구에는 규격 외의 노란색 스테인리스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어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넘어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림 14] 소변기 손잡이
[Fig 14] Urinal handle

(3) 경기대학교 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은 농경유물과 민화를 주로 전시하는 경기대학교 부속박물관으로 1983년 개관한 이래 '한국의 농경문화', '광개토대왕비 연구의 재조명'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 대표적인 대학박물관이다. 경기대학교박물관의 입구와 화장실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7]. 박물관 입구의 경사로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어있다. 지하1층에 마련된 남녀 장애인 화장실 입구 통로에는 노란색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15] 입구 경사로

[Fig 15] Entrance ramp



[그림 16] 화장실 입구 통로

[Fig 16] Toilet entrance passage

여성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용변기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휴지걸이도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반면 비상호출버튼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성장애인화장실 세면대에는 손잡이가 없어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림 17] 여성 장애인 화장실
[Fig 17] Female handicapped restroom



[그림 18] 여성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
[Fig 18] Women disabled toilet washbasin

남성 장애인 화장실의 출입문은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기 힘든 미닫이이다. 남성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휴지걸이도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비상호출버튼은 없다. 남성 장애인 화장실에는 소변기가 있는데, 손잡이가 없어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



[그림 19] 남성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Fig 19] Male handicapped toilet door



[그림 20] 남성 장애인 화장실
[Fig 20] Male handicapped restroom



[그림 21] 남성 장애인 화장실 소변기

[Fig 21] Male handicapped toilet urinal

2) 박물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대책 방안

앞서 살펴본 기관의 시설은 나름대로 잘 정비되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 먼저 동선의 기본이 되는 모든 통로와 계단 등은 바닥마감을 신경 써서 미끄럽지 않고 경사가 없게 설계해야 하며, 시설마다 통일성 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정권장규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휠체어의 이동에 무리가 없도록 바닥면의 요철은 최소화하고, 미끄럼 정도나 폭도 불편하지 않게 시공단계부터 신경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 표지판과 경사로 유도 표지판 등으로 미리 동선을 알려 보호자 없이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곳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 이동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4. 맺는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소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제공은 결국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여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법률적인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고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함으로 인한 거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장애인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화합의 장소로 박물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편의시설의 확충은 향후 국내 박물관의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Reference

- [1] Security of facilities improvement for the handicapped, aged men,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 Act 11443 (2012).
- [2] Welfare of a handicapped persons Act 11521 (2013).
- [3] https://en.wikipedia.org/wiki/Seoul_National_University_Hospital
- [4]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Convenient Facility Designation.
- [5] National Museum of Korea convenience movement for disabled person 'disregard', Ablenews (2012).
- [6] Inspection on accommodation for the disabled in Seoul Museum of History, Ablenews (2013).
- [7] accommodation for the disabled in Kyonggi University Museum, Ablenews (2013).